2019년도 2-6차 (8월29일 개강반) 보육실습 운영계획서

I. 보육실습이란

□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지식, 기술 태도 등을 보육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여보육교사로서 교육·훈련하는 것으로 전공필수 과목입니다.

Ⅱ. 개요

□ 2019년 2-6차시 보육실습 학습반

○ 개강일 : 2019년 08월 29일(목)

○ 종강일 : 2019년 12월 11일(수)

- □ 실습인정기간
 - **○** 2019년 9월 16일(월) ~ 2019년 11월 22일(금)[10주간] 240시간 이상 진행
 - ※ 6주 연속실습 / 240시간 이상/ 평일(월~금) 중에만 가능
 - ※ 1일 8시간 초과 불가(오전 9시~오후 7시 이내만 가능)
 - ※ 공휴일 결근 시 실습종료일 기준으로 연속 추가실습 진행 必 (10/3, 10/9)

□ 출석수업일정

| 구분 | 일자 | 시간 | 장소 | 교육시간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|
| 오리엔테이션 | | [오전] 09시~13시 | 서울/부산/대구/대전 | | |
| | | [오후] 14시~18시 | 서울 | 4시간 | |
| 최종보고회 | 19.12.07(토) | [오전] 09시~13시 | 서울/부산/대구/대전 | 4시간 | |
| | | [오후] 14시~18시 | 서울 | | |

- ※ 해당 일정은 개강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.
- ※ OT시 출석 한 분반으로, 최종보고회에도 적용 됨(변경 불가)

Ⅲ. 실습 관련 서류제출 일정

| No. | 제출시기 | 제출일자 | 제출서류 | 제출방법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|--|
| 1 | 학습자모집 및 1차서류제출 | ~8/23 | ·보육실습 신청서 ·보육실습생 서약서 ·보육실습생 신상카드 ·실습기관 현황카드 ·실습기관 및 지도자 증빙서류 (동의서 추후 안내예정) | 등기 | 1. 신청서, 서약서, 신상카드 반드시 자필서명 2. 실습기관 및 지도자 증빙서류 외 모두 원본제출 |
| 2 | 실습진행 및 과제제출 | 9/16~11/22 | ·실습진행 ·일화기록에 의한 영유아관찰 (1차과제) | 온라인 | |
| 3 | 실습일지 및 평가서류 제출 | ~11/29 | ·실습일지 제본 ·실습평가서 1부(기관작성) ·실습확인서 2부(기관작성) | 등기 | 모든 제출서류 원본 |

Ⅳ. 보육실습 진행절차

□ 전체진행절차



□ 절차 별 상세내용

| 절차 | 상세 내용 |
|-----------|--|
| E. 1 | - 수강신청 및 수강료 입금 완료(분반 설정) |
| | - 실습기관 섭외 |
| | > 실습기관 및 지도자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[□ 실습기관기준] |
| | |
| | 내용 참조 |
| | <mark>- 1차 제출서류</mark> |
| ① 수강신청 및 | > 보육실습 신청서 |
| 1차서류제출 | > 보육실습생 서약서 |
| (~8/23) | >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|
| | > 실습기관 현황카드 |
| | > 실습기관 및 지도자 증빙서류 |
| | - 제출 기한 내에 서류 등기 발송 |
| | _ 게 된 기 단 테 비 : T H <u>O / T 된 O</u> |
| | w 기위 내 미계호 가 되스 브리 |
| @ om=l 23 | ※ 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|
| ② OT참석 | - 학습자가 신청한 분반에 해당하는 일자 및 시간에 맞추어 참석 |

| | - 6월 29일(토요일) | | |
|--------------|---|--|--|
| | > [오전반] 오전 9시 / [오후반] 오후 2시 | | |
| (8/31) | > 4시간 진행 | | |
| (0/01) | | | |
| | ※ 개강 이후 분반 변경은 불가능 | | |
| | ※ 공결사항 적용되지 않으며, 미참시 과목 이수 불가 | | |
| | - 상기 1차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 발 | | |
| | 송 후 회신서 수신 후 학습자는 실습가능 | | |
| | - 실습가능여부에 대하여 SMS발송 예정 | | |
| | - 실습은 <u>실습인정기간 내에만</u> 가능 | | |
| ♠ 기소→1=1 | - 실습은 6주 연속으로 진행되어야 하며, 평일(월~금)에만 가능(주말실습 불 | | |
| ③ 실습진행 | 가) | | |
| (9/16~11/22) | - 최소 240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, 1일 8시간 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실습은 오 | | |
| | 전 9시부터 오후 7시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(야간실습 불가) | | |
| | - 온라인 수강도 병행해야함 | | |
| | - 실습진행 기간에는 지도교수의 기관방문이 이루어짐 | | |
| | - 온라인을 통한 1차과제 제출(일화기록에 의한 영유아 관찰) | | |
| | - 최종서류제출[원본이여야만 인정] | | |
| | > 실습일지 제본 1부 | | |
| | > 실습평가서 1부(기관작성) | | |
| ④ 최종서류제출 | > 실습확인서 2부(기관작성) | | |
| (11/29) | - 제출기한 내에 발송 | | |
| | | | |
| | ※ 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| | |
| | - 학습자가 신청한 분반에 해당하는 일자 및 시간에 맞추어 참석 | | |
| | - 12월 07일(토요일) | | |
| ⑤ 최종보고회 | > [오전반] 오전 9시 / [오후반] 오후 2시 | | |
| 참석 | > 4시가 진행 | | |
| (12/7) | / 1 C 0 | | |
| (12/1) | ※ OT시 참여한 분반으로 참석 필수 | | |
| | | | |
| | ※ 공결사항 적용되지 않으며, 미참시 과목 이수 불가 | | |

□ 실습기관 기준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|--|
| 실습기관 | · 정원 15명 이상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기간에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▶ 증빙서류 : 평가인증서 사본 혹은 시설 인·허가증 사본 ※ 교육원 운영 방침 상 유치원 실습은 불가 |
| | · 확인방법 ▶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(<u>http://info.childcare.go.kr/info/main.jsp</u>) |

| 실습지도자 | ▶ 통합정보공시→어린이집·유치원 찾기→어린이집 검색 ·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 담임교사 ▶ 증빙서류: 1급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부 · 지도자 별 실습정원은 1인당 최대 3명 이내만 가능 ·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음 · 단, 가정어린이집(20인 이하)에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 겸직 원장이 실습지도 가능함 |
|-------|---|
| 실습시간 | 현장실습시간은 <u>240시간 이상</u>으로 함 1일 이수시간은 <u>최대 8시간</u> 이하로 제한함. (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이내에 진행된 실습만 가능) 실습은 시작일로부터 6주 연속으로만 가능 |
| 주의사항 | · 교육원 실습운영 방침 상 6주 연속의 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, 실습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 · 단,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교육원과 사전 협의 하에 가능하나 실습인정 기 간 내에 진행되어야 함 |

Ⅴ. 보육실습일지 작성

□ 보육실습일지

- 실습일지는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
- O 보육실습일지는 워드타이핑 및 자필 가능
- 모든 양식은 필수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나 단, 반일보육활동계획안 과 일일 보육활동 계획안은 택 1 가능
- 보고서 양식 외의 추가로 양식을 첨부하여도 무방함
- 제공된 양식의 순서대로 작성 후 완성된 보고서는 **본드제본** 후 등기발송

□ 실습일지작성

○ 「보육실습일지」 양식 내의 '실습일지'는 실습을 진행한 일자에 따라

작성하며, 매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함.

- 실습일지는 실습을 진행한 일자에 따라 매일 작성해야 하며,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습받은 내용을 기입하며, 당일 일과 후 또는 익일 실습지도자에게 제출하여 슈퍼비전을 받도록 함.
- 실습일지에는 실습지도교사의 의견 및 도장(또는 서명)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함.

VI. 현장실습 주의사항

| □ 1 |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을 필히 확인하고 실습가능여부를 검토한 |
|----------|--|
| 3 | 후에 실습을 신청하도록 합니다. <u>추후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이</u> |
| _ | 충족되지 않을 시 실습취소 및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현장실습기 |
| <u>:</u> | 준을 숙지하여야 합니다. |
| <u> </u> | 보육실습 과목 신청자는 <mark>사전에 실습장소를 섭외</mark> 할 것을 권장합니다. |
| □ 1 | 실습과목은 사전 <u>공지된 실습기간 내에 실습완료 및 일지제출 등을 완료해야</u> |
| (| <u>이수가능</u> 합니다. |
| | 실습신청 및 공문발송처리 없이 임의로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|
| | 개강 이후 분반 변경은 불가하며, OT 참석 때의 요일 및 시간은 최종보고회 |
| <u>[</u> | 때 동일하게 적용 됨. |
| | 실습과목은 실습 뿐만아니라 <mark>온라인강의 출석도 병행</mark> 하여야 하며, 온라인 강 |
| 9 | 의실의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며,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지도교수님 및 |
| 1 | 실습을 수강하는 학습자들과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학습 참여의 |
| - |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합니다. |
| | |

- □ 실습에 임하면서 보육실습 온라인강의를 수강(실습시간 내의 강의수강은 인정되지 않음)하여야 하며, 출석수업 2회(OT, 최종보고회)에 모두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. 온라인 강의 및 출석 수업을 포함하여 출성률이 80% 미만일 경우 실습과목이 이수되지 않습니다. (출석 수업 1회라도 불참 시에는 이수불가)
- □ 최종평가회 출석 시 학습자에게 교부되는 <u>보육실습확인서 1부는 학습자가</u>보관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 보육인력국가자격증센터로 제출합니다.[서류

보관에 유의)